

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(안) 관련 기관 의견서 분석 결과

□ 조사 개요

- 일시/장소 : '19. 3. 20.(수) 기록관리지원부 업무협의회* / 후생동, 중회의실(2동), 대회의실(3동) * 기록물관리지침교육 2부 행사
- 응답자 : 기록물관리 담당자 136명(총 453명 참석) *()는 참석인원

합계	중앙(53)		특행(97)		지자체(128)		교육청(151)		군기관 (24)
	본부	소속	본청	지청	광역	기초	본청	지원청	
136	11	4	6	10	3	36	17	42	7

- 조사내용
 -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안으로 단위과제 '사전협의' 강화와 단위과제 '분리운영'을 제안하고 기록관 의견 청취
 - ※ 조사시 배포한 <개선안 설명자료 및 의견서 양식>은 붙임 참고

□ 조사 결과

- 단위과제 '사전협의'(78명), 단위과제 '분리운영'(45명), 기타(13명) 응답

구분	합계	중앙		특행		지자체		교육청		군기관
		본부	소속	본청	지청	광역	기초	본청	지원청	
단위과제 사전협의	78	4	3	2	3	2	25	8	31	
단위과제 분리운영	45	4	1	4	6	1	8	4	10	7
기타	13	3			1		3	5	1	

- 단위과제 '사전협의' 선택 이유
 - 1인 기록관체제에서 단위과제 '분리운영'은 업무과중
 - 체제 변경시 제도 안정화를 위한 시간, 노력 등 행정 낭비 우려
 - 교육청은 BRM 주관 교육부와 유기적 협치 가능
- 단위과제 '분리운영' 선택 이유
 - 기관 BRM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무관심 때문에 단위과제는 기록관이 전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
 - 사전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독자적 권한 확보가 필요
 - 특행은 기관 및 업무 특성상 기록관의 단위과제 통제 필요

○ 기타 의견

- 교육청 및 지자체 일부는 기록관 담당자가 기관 BRM을 운영하고 있어 '사전협의'나 '분리운영' 불필요(7명)
- 조직실과 BRM 관련 협의가 불가능해 보임
- 기존 분류체계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함

○ 국가기록원 제안 사항(41명)

- 지침, 훈령 등 각종 규정 및 법령에 보존기간 명시할 경우 국가 기록원의 검토 또는 협의 후 법령 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
-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 통제 필요
- 기록물철 단위로 보존기간 책정 필요
- 통합 BRM 검색 사이트 요청
- 처리과·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개정, 지자체 보존기간 준칙 제정
- 온나라와 기록관리시스템 통합, BRM시스템과 일괄 연계
- 기록관에서 BRM 관리시 국가기록원이 업무조정해야 함

□ 시사점

- 업무과중 및 체제개편 부담 등의 이유로 단기 적용이 용이해 보이는 '사전협의'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
 - 지자체의 경우 기관 BRM 관리를 기록관 담당자가 통합 운영하는 기관이 많아 기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, 기록관리기관이 단위과제 관리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
- ⇒ 단위과제 '사전협의' 및 '분리운영' 모두 업무량 증가와 체제개편이 수반 되므로 두가지 안에 대한 업무량 및 추가되는 업무의 심층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

□ 향후 계획

- 기관유형별(중앙, 지자체, 교육청) BRM 담당 현황 조사 : 4월 중
- BRM 단위과제 운영 관련 기관 심층 인터뷰 실시 : 4월 중
-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안 관련 연구세미나 개최 : 4. 10.

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(안)

BRM 단위과제와 기록관리 연계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위 과제 운영 개선(안)을 제안하고 각 기록관 의견을 듣고자 함

I. 추진배경

- 국가기록혁신TF 제안 기록분류체계 혁신과제('17.9.~12.)
 - BRM 정보를 참조하되, 기록물 분류·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발
 - BRM 단위과제 관리에 기록관리 분야 참여 제도화
- 기록분류체계 혁신 필요성에 대한 기관 설문조사('18.8.1.~14.)
 - 단위과제 확정 전 협의를 통해 기록관리기관의 BRM 운영 통제 강화(51%), 기능분류(BRM)와 기록분류를 연계하되 독자 체계 도입(49%) 의견 대등

 <단위과제 사전협의 vs. 개별 기록분류체계 신설> 대안 검토 필요

II. 현행 단위과제 운영시 문제점

- 단위과제 설편시,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 측면 고려사항 반영 미흡
 - BRM 담당자(부서/기관 기능분류담당자)만 단위과제 신설·변경에 관여
 - BRM 담당자의 단위과제 승인 조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, BRM과 기록관리의 연계성 괴리 심각
 - 단위과제 확정시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 영역 전반에 대해 기록관리기관과 BRM 담당자간 협의 장치 필요(기록관 업무에 반영)
- 단위과제 과대·과소 책정 시 기록물 편철 등 관리 단위로 부적합
 - 기록물의 단위과제 오분류시 중요 기록물 이관·평가·보존·활용 등 관리 전반에 문제 발생

Ⅲ. 개선 검토 방안

<1안> 단위과제 ‘사전협의’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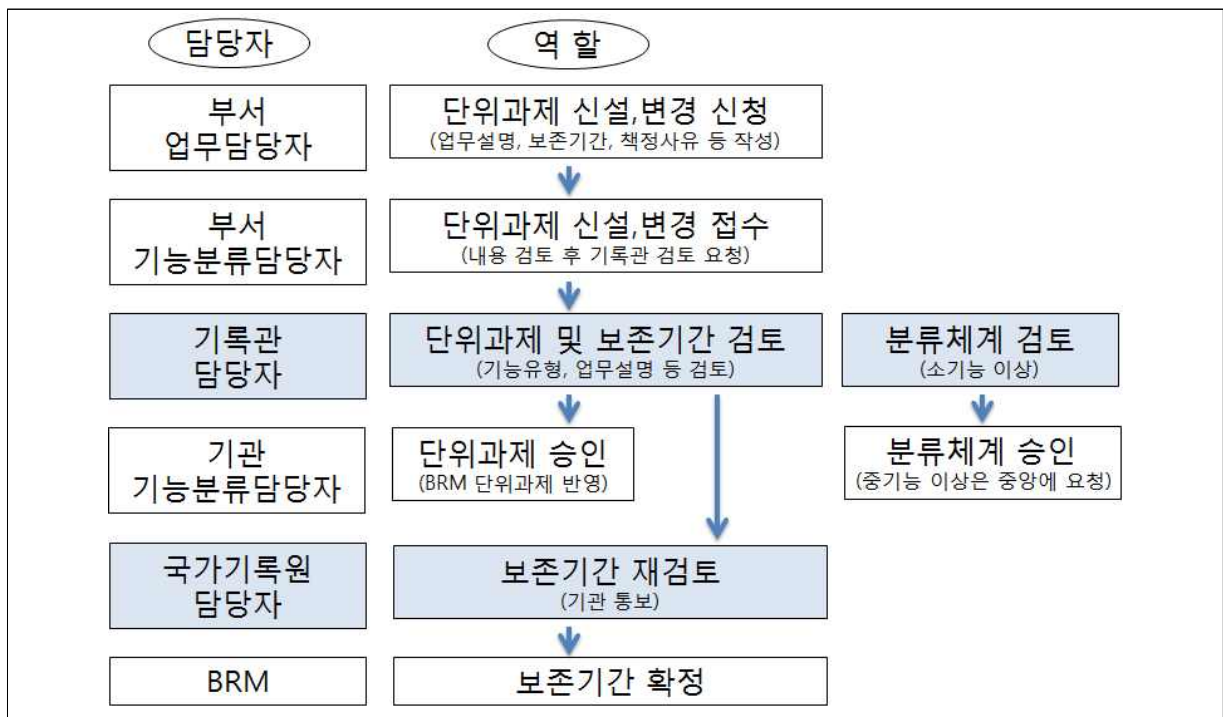
□ BRM 단위과제 책정시 ‘사전협의’ 절차 도입

- BRM 단위과제 승인 과정에 기록관의 조정 역할 부여
- 단위과제에 대한 기록관리 연계 강화로 기록관리기준표 품질 개선

□ 단위과제 ‘사전협의’를 위한 기록관리기관의 역할

- (기록관)
 - 단위과제 신설·변경 요청시 기관 기능분류담당자 승인 이전 핵심적 속성 정보* 검토 * 분류체계, 기능유형, 업무설명, 관련 법령 등
 - 소기능 이상 분류체계 개선 필요시 변경 요청
- (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) 보존기간 협의·확정

<단위과제 사전협의 절차>



□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및 조치사항

- BRM 주관기관* 협의 : 절차 도입 위한 각급기관 지침 시행
* 행안부(조직기획과, 자치분권제도과) 및 교육부(지방재정교육과)
- 법규 개정 : 해당없음
- 단위과제 정비를 통한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개정

<2안> 단위과제 '분리운영'

□ BRM에서 단위과제를 분리하여 기록분류 단위로 재설계

- BRM에서 '소기능'을 기능분류의 최하위 단위로 정립하고, '단위과제'를 기록분류 단위로 분리
- 단위과제의 경우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관리
- BRM 소기능 이상의 분류체계를 참조정보로 연계함

□ 단위과제 분리 운영을 위한 기록관리기관의 역할

(중앙기록물관리기관)	(기록관)	(영구기록물관리기관)
「기록관리기준표 개정 및 관리 절차」(지침)* 마련	현행 기록관리기준표 개정 →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검토 요청 →확정·고시 (수시) 단위과제 신설·변경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검토 요청 →확정 후 재고시	개정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(수시) 기록관 협의 내용 검토 후 확정 통보

* 단위과제 유형 및 책정 기준, 기록관리항목 수정·보완,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담당자별 역할 정의, 단위과제 신설·변경 절차 등

□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및 조치사항

- BRM 주관기관 협의 : BRM 단위과제 분리 운영 방안
- 법규 개정 :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(기록관리기준표)
-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개정

<장단점 비교>

	1안(단위과제 사전협의)	2안(단위과제 분리운영)
장점	√ 단위과제 중복편성, 보존기간 상이책정 예방 최대화 √ 기록물 미생산 단위과제 사전포착 √ 단위과제 명칭 통일성 제고 √ 시스템 및 법규 정비 과정 단순	√ 단위과제 통제 권한을 기록관리기관이 확보하여 단위과제 기반의 실질적 기록관리 체제 개편 √ 기록관리기준표는 기관이 생산·관리하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평가도구로서 활용
단점	√ 기능분류 외 기록관리 지원 미흡 √ 조직관리 부서의 고유업무에 대한 조정권 획득 난점 √ 기록관리기관 담당자 업무 부담 가중	√ 단위과제 분리 운영을 위한 BRM 주관기관과의 협의 부담 √ 기록관리기준표 전면 개정 및 단위과제 운영 관련 지침 제정 필요 √ 기록관리기관 담당자 업무 부담 가중

※ 본 의견서는 교육 종료후 출입문 앞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(안)에 대한 의견서

1. 소속된 기관 유형

해당란에 √ 표시

- 중앙(본부) 중앙(소속) 특행(본청) 특행(지·원청)
- 지자체(광역) 지자체(기초) 교육청(본청) 교육청(지원청)
- 군기관

2. 개선(안)에 대한 선호도

해당란에 √ 표시

- (1안) 단위과제 '사전협의' 강화
- (2안) 단위과제 '분리운영'
- 기타

3. 위 2번 문항에서 각안을 선택하신 이유

4. 이외 기록원에 제안할 사항